

회계학개론

※ 아래 문제들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또한 기업은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계속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해오고 있다고 가정한다. 단, 문제에서 주어진 이자율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연(年)이자율이며, 자료에서 제시한 모든 항목과 금액은 중요하다. 자료에서 제시한 것 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고 답한다. 예를 들어 법인세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법인세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계산문제에서 단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는 경우 가장 근사치의 답을 선택한다. 위의 조건 하에서 각 문제의 답지항 중 가장 합당한 답을 고르시오.

1. (주)세무는 20×1년 초 ₩100,000을 지급하고 토지를 취득하였다. 취득당시 거래원가 ₩20,000이 추가로 발생하였다. 20×1년 말 현재 동 토지와 동등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110,000을 지급하여야 하며, 추가로 취득관련 거래원가 ₩5,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주)세무는 20×1년 말 현재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동 토지를 매도할 경우 거래원가 ₩20,000을 차감하고 ₩98,000을 수취할 수 있다. 20×1년 말 현재 토지의 역사적원가, 공정가치, 현행원가를 금액이 큰 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 ① 역사적원가 > 현행원가 > 공정가치 ② 역사적원가 > 공정가치 > 현행원가
- ③ 현행원가 > 공정가치 > 역사적원가 ④ 현행원가 > 역사적원가 > 공정가치
- ⑤ 공정가치 > 역사적원가 > 현행원가

2. (주)세무는 20×1년 초 영업부에서 사용할 차량운반구(취득원가 ₩2,000,000, 내용연수 3년, 잔존가치 ₩200,000, 정액법 상각, 재평가모형 적용)를 취득하였으며, 자산의 총장부금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재평가회계처리를 한다. 차량운반구와 관련하여 20×2년 말에 손상이 발생하였으며, 차량운반구의 20×1년과 20×2년 말 공정가치와 회수가능액은 다음과 같다. 차량운반구 관련 회계처리가 (주)세무의 20×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재평가잉여금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지 아니하며, 처분부대원가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 구분 | 20×1년 말 | 20×2년 말 |
|-------|------------|----------|
| 공정가치 | ₩1,600,000 | ₩500,000 |
| 회수가능액 | 1,600,000 | 300,000 |

- ① ₩400,000 감소 ② ₩600,000 감소 ③ ₩900,000 감소
- ④ ₩1,100,000 감소 ⑤ ₩1,300,000 감소

3. (주)세무는 20×1년 초 (주)한국이 동 일자로 발행한 사채(액면금액 ₩1,000,000, 표시이자율 연 10%, 만기 4년, 매년 말 이자지급)를 ₩939,240에 취득하고 상각 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취득 시 유효이자율은 연 12%이며, 취득당 시 손상은 없었다. (주)세무는 20×1년 말 (주)한국으로부터 20×1년도 이자는 정상적으로 수취하였으나, 20×1년 말 동 금융자산에 신용손상이 발생하였다. (주)세무는 채무불이행 발생확률을 고려하여 20×2년부터 만기까지 매년 말 이자 ₩70,000과 만기에 원금 ₩700,000을 수취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금융자산의 회계 처리가 (주)세무의 20×1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현재가치 계산 시 다음에 제시된 현가계수표를 이용한다.)

| 기간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 |
|----|---------------|--------|---------------|--------|
| | 10% | 12% | 10% | 12% |
| 1 | 0.9091 | 0.8929 | 0.9091 | 0.8929 |
| 2 | 0.8265 | 0.7972 | 1.7355 | 1.6901 |
| 3 | 0.7513 | 0.7118 | 2.4869 | 2.4018 |
| 4 | 0.6830 | 0.6355 | 3.1699 | 3.0374 |

- ① ₩139,247 감소 ② ₩164,447 감소 ③ ₩172,854 감소
 ④ ₩181,772 감소 ⑤ ₩285,597 감소

4. (주)세무는 20×1년 초 정부보조금으로 ₩500,000을 수취하여 기계설비(취득원가 ₩2,000,000,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 원가모형 적용)를 취득하였다. 20×2년 초 (주)세무는 동 기계설비에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1,000,000의 지출을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기계설비의 잔존가치는 ₩100,000 증가하고, 내용연수는 1년 연장되었다. 기계설비와 관련하여 (주)세무가 20×2년도에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단, 정부보조금은 자산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한다.)

- ① ₩360,000 ② ₩380,000 ③ ₩400,000 ④ ₩420,000 ⑤ ₩440,000

5. 재고자산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료원가, 노무원가 및 기타 제조원가 중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은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없다.
- ② 성격과 용도 면에서 유사한 재고자산에는 동일한 단위원가 결정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성격이나 용도 면에서 차이가 있는 재고자산에는 서로 다른 단위원가 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③ 순실현가능가치를 추정할 때 재고자산의 보유 목적은 고려하지 않는다.
- ④ 자가건설한 유형자산의 구성요소로 사용되는 재고자산처럼 재고자산의 원가를 다른 자산계정에 배분하는 경우, 다른 자산에 배분된 재고자산 원가는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비용으로 인식한다.
- ⑤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재고자산항목의 원가와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되고 분리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원가는 개별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6. 투자부동산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배기업 또는 다른 종속기업에게 부동산을 리스하는 경우, 이러한 부동산은 연결재무제표에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 ② 부동산의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다른 자산에서 투자부동산으로 또는 투자부동산에서 다른 자산으로 대체한다.
- ③ 투자부동산의 손상, 멸실 또는 포기로부터 제3자에게서 받는 보상은 받을 수 있게 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④ 재고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는 경우, 재고자산의 장부금액과 대체시점의 공정가치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⑤ 부동산 보유자가 부동산 사용자에게 부수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전체 계약에서 그러한 용역의 비중이 경미하다면 부동산 보유자는 당해 부동산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7. (주)세무는 20×1년 초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에 해당하는 사채(액면금액 ₩2,000,000, 표시이자율 연 8%, 만기 3년, 매년 말 이자지급)를 ₩1,900,504에 발행하고, 사채발행비 ₩92,604을 현금으로 지출하였다. 발행당시 시장이자율은 연 10%이며, (주)세무는 동 사채와 관련하여 20×1년도 이자비용으로 ₩216,948을 인식하였다. 20×2년 말 (주)세무가 경과이자를 포함하여 ₩2,000,000에 사채 전부를 조기상환하였다면, 사채의 상환으로 인식할 사채상환이익은? (단, 현재가치 계산 시 다음에 제시된 현재가치표를 이용한다.)

| 기간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 |
|----|---------------|--------|---------------|--------|
| | 8% | 10% | 8% | 10% |
| 1 | 0.9259 | 0.9091 | 0.9259 | 0.9091 |
| 2 | 0.8573 | 0.8265 | 1.7833 | 1.7355 |
| 3 | 0.7938 | 0.7513 | 2.5771 | 2.4869 |

- ① ₩51,325 ② ₩61,345 ③ ₩88,630 ④ ₩123,656 ⑤ ₩160,000

8.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세무는 저가기준으로 가중평균 소매재고법을 적용하고 있다. (주)세무의 재고자산과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매출총이익은? (단, 정상파손은 매출원가로 처리하고, 비정상파손은 기타비용으로 처리한다.)

| 구분 | 원가 | 판매가 |
|-------|---------|-----------|
| 기초재고 | ₩80,000 | ₩100,000 |
| 총매입액 | 806,000 | 1,000,000 |
| 매입할인 | 50,000 | - |
| 총매출액 | - | 1,050,000 |
| 매출환입 | - | 24,000 |
| 순인상액 | - | 95,000 |
| 순인하액 | - | 50,000 |
| 정상파손 | - | 50,000 |
| 비정상파손 | 10,000 | 15,000 |

- ① ₩221,000 ② ₩227,800 ③ ₩237,800 ④ ₩245,000 ⑤ ₩261,800

9.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주)세무가 20×1년 11월 초 고객과 체결한 계약과 관련된 정보가 다음과 같을 때, (주)세무가 20×1년도에 인식할 수익은? (단, 라이선스를 부여하기로 하는 것과 설비를 이전하기로 하는 것은 구별되며, 변동대와 고정대가는 모두 개별 판매금액을 반영한 것이다.)

- (주)세무는 계약일로부터 5년 동안 고객이 (주)세무의 상호를 사용하고 제품을 판매할 권리를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라이선스를 부여하기로 하였으며, 라이선스에 추가하여 상점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
- (주)세무는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대가로 고객의 월 매출액 중 3%(변동대가)를 판매기준 로열티로 다음달 15일에 수령하기로 하였다.
- (주)세무는 설비가 인도되는 시점에 설비의 대가로 ₩1,500,000(고정대가)을 받기로 하였다.
- 계약과 동시에 설비를 고객에게 이전하였으며, 고객의 20×1년 11월과 12월의 매출액은 각각 ₩7,000,000과 ₩8,000,000이다.

- ① ₩210,000 ② ₩450,000 ③ ₩500,000 ④ ₩1,710,000 ⑤ ₩1,950,000

10.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포괄손익계산서에 기타포괄손익의 항목은 관련 법인세 효과를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할 수 있다.
- ②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이외에도 연차보고서 및 감독기구 제출서류에 반드시 적용한다.
- ③ 서술형 정보의 경우에는 당기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 하더라도 비교정보를 포함하지 않는다.
- ④ 재무상태표에 자산과 부채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그리고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유동성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은 허용하지 않는다.
- 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에 따라 공시되는 정보가 중요하지 않더라도 그 공시를 제공하여야 한다.

11. (주)세무는 20×1년 7월 1일에 본사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와 건물을 ₩14,000,000에 일괄취득하고, 공통으로 발생한 취득 관련 직접원가 ₩1,000,000을 지출하였다. 취득당시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치는 각각 ₩9,600,000과 ₩6,400,000이었다. 건물의 내용연수는 4년, 잔존가치는 ₩1,000,000, 연수합계법으로 감가상각한다. 건물과 관련하여 (주)세무가 20×2년도에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단, 감가상각은 월할 계산하고 건물에 대해 원가모형을 적용한다.)

- ① ₩1,380,000 ② ₩1,500,000 ③ ₩1,610,000 ④ ₩1,750,000 ⑤ ₩1,890,000

12. (주)세무는 20×1년 초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에 해당하는 사채(액면금액 ₩1,000,000, 표시이자율 연 8%, 만기 3년, 매년 말 이자지급)를 ₩950,252(유효이자율 연 10%)에 발행하였다. (주)세무는 20×2년 초에 표시이자율을 연 5% (매년 말 이자지급)로, 만기를 20×5년 말로 조건을 변경하는 것에 사채권자와 합의하였다. 조건변경과 관련한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20×2년 초 시장이자율은 연 12%이다. 동 사채의 회계처리가 (주)세무의 20×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현재가치 계산 시 다음에 제시된 현재가치표를 이용한다.)

| 기간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 | |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 | | |
|----|---------------|--------|--------|--------|---------------|--------|--------|--------|
| | 5% | 8% | 10% | 12% | 5% | 8% | 10% | 12% |
| 1 | 0.9524 | 0.9259 | 0.9091 | 0.8929 | 0.9524 | 0.9259 | 0.9091 | 0.8929 |
| 2 | 0.9070 | 0.8573 | 0.8265 | 0.7972 | 1.8594 | 1.7833 | 1.7355 | 1.6901 |
| 3 | 0.8638 | 0.7938 | 0.7513 | 0.7118 | 2.7233 | 2.5771 | 2.4869 | 2.4018 |
| 4 | 0.8227 | 0.7350 | 0.6830 | 0.6355 | 3.5460 | 3.3121 | 3.1699 | 3.0374 |
| 5 | 0.7835 | 0.6806 | 0.6209 | 0.5674 | 4.3295 | 3.9927 | 3.7908 | 3.6048 |

- ① ₩207,932 감소 ② ₩272,391 감소 ③ ₩39,637 증가
 ④ ₩53,212 증가 ⑤ ₩83,423 증가

13. (주)세무의 20×1년도 주당이익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세무의 20×1년도 회석주당이익은?

- 20×1년 초 유통보통주식수는 10,000주이고, 유통우선주식수는 5,000주이다.
- 우선주(누적적 비참가적, 주당 액면금액 ₩1,000, 배당률 연 10%)는 전환우선주로 우선주 5주당 보통주 1주로 전환이 가능하다.
- 20×1년도 당기순이익은 ₩993,600이다.
- 4월 1일 신주인수권 10,000개(신주인수권 1개당 보통주 1주 인수, 행사가격 개당 ₩3,000)를 발행하였다.
- 7월 1일 우선주 2,000주가 보통주로 전환되었다.
- 보통주식의 4월 1일 종가는 주당 ₩4,000, 12월 31일 종가는 주당 ₩6,000이고, 당기 평균주가는 주당 ₩5,000이다.
- 기중에 전환된 전환우선주에 대해서 우선주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가중평균주식수는 월할 계산한다.

- ① ₩50 ② ₩53 ③ ₩57 ④ ₩68 ⑤ ₩71

14. (주)세무는 20×1년 초 순자산 장부금액이 ₩1,000,000인 (주)한국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 80%를 ₩900,000에 취득하여 지배력을 획득하였다. 취득일 현재 (주)한국의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건물을 제외하고 모두 일치하였다. 건물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각각 ₩500,000과 ₩600,000이고, 정액법(잔존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으로 상각한다. (주)한국은 원가에 25%의 이익을 가산하여 (주)세무에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20×1년 (주)세무가 (주)한국으로부터 매입한 상품 중 ₩50,000이 기말상품재고액으로 계상되어 있다. 20×1년도 (주)세무의 별도재무제표에 보고된 당기순이익은 ₩250,000이고, (주)한국의 당기순이익이 ₩120,000이라고 할 때, (주)세무의 20×1년도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상 지배기업소유주 귀속 당기순이익은? (단, (주)세무는 별도재무제표 상 (주)한국의 주식을 원가법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비지배지분은 종속기업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공정가치에 비례하여 결정한다.)

- ① ₩328,000 ② ₩330,000 ③ ₩338,000 ④ ₩346,000 ⑤ ₩350,000

15. 주식기준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에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를 부채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 말과 결제일에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지 않는다.
- ②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취득된 지분상품이 추후 상실되거나 주식선택권이 행사되지 않은 경우에는 종업원에게서 제공받은 근무용역에 대해 인식한 금액을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③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어 내재가치로 측정한 경우에는 부여일부터 가득일까지 내재가치 변동을 재측정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가득일 이후의 내재가치 변동은 수정하지 않는다.
- ④ 시장조건이 있는 지분상품을 부여한 때에는 그 시장조건이 충족되는 시점에 거래상대방에게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을 인식한다.
- ⑤ 거래상대방이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 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을 지급하는 대신 지분상품을 발행하면 부채를 발행되는 지분상품의 대가로 보아 자본으로 직접 대체한다.

16. (주)세무는 20×1년 1월 1일 액면금액 ₩1,000,000의 전환사채를 액면발행하였다. 다음 자료를 이용할 경우, 전환사채 상환 회계처리가 (주)세무의 20×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현재가치 계산 시 다음에 제시된 현재가치표를 이용한다.)

- 표시이자율 연 5%, 매년 말 이자지급
- 만기상환일 : 20×3년 12월 31일
- 일반사채의 유효이자율 : 20×1년 1월 1일 연 10%, 20×2년 1월 1일 연 12%
- 상환조건 : 상환기일에 액면금액의 115%를 일시상환
- 전환조건 : 사채액면 ₩1,000당 보통주식 1주(주당액면 ₩500)로 전환
- 20×2년 1월 1일에 전환사채 중 50%를 동 일자의 공정가치 ₩550,000에 상환

| 기간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 |
|----|---------------|--------|---------------|--------|
| | 10% | 12% | 10% | 12% |
| 1 | 0.9091 | 0.8929 | 0.9091 | 0.8929 |
| 2 | 0.8265 | 0.7972 | 1.7355 | 1.6901 |
| 3 | 0.7513 | 0.7118 | 2.4869 | 2.4018 |

- ① ₩25,583 감소 ② ₩31,413 감소 ③ ₩55,830 감소
- ④ ₩17,944 증가 ⑤ ₩25,456 증가

17. (주)세무는 확정급여제도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세무가 20×2년도에 인식할 퇴직급여와 기타포괄손익은?

- 20×1년 말 사외적립자산 잔액은 ₩300,000이며, 확정급여채무 잔액은 ₩305,000이다.
- 20×2년 초에 현금 ₩180,000을 사외적립자산에 출연하였다.
- 20×2년도의 당기근무원가는 ₩190,000이다.
- 20×2년 말에 사외적립자산 ₩150,000이 퇴직종업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었다.
- 20×2년 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와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는 각각 ₩373,000과 ₩375,000이며, 자산인식상한은 ₩1,000이다.
- 순확정급여부채(자산) 계산 시 적용한 할인율은 연 10%로 변동이 없다.

- | <u>퇴직급여</u> | <u>기타포괄손익</u> | <u>퇴직급여</u> | <u>기타포괄손익</u> |
|-------------|---------------|-------------|---------------|
| ① ₩172,500 | 손실 ₩500 | ② ₩172,500 | 손실 ₩1,500 |
| ③ ₩172,500 | 이익 ₩1,500 | ④ ₩190,500 | 손실 ₩16,500 |
| ⑤ ₩190,500 | 이익 ₩16,500 | | |

18. 법인세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산의 세무기준액은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될 때 기업에 유입될 과세대상 경제적효익에 세무상 가산될 금액을 말한다.
- ② 과거기간에 이미 납부한 법인세 금액이 그 기간 동안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였다면 그 초과금액은 자산으로 인식한다.
- ③ 사업결합에서 발생한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
- ④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킨다.
- 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현재가치로 할인하지 않는다.

19. (주)세무의 20×1년도 현금흐름표 상 영업활동순현금유입액은 ₩100,000이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주)세무의 20×1년도 당기순이익은?

- 법인세비용 ₩50,000
- 대손상각비 ₩20,000
- 감가상각비 ₩25,000
- 사채이자비용 ₩40,000(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10,000 포함)
- 토지처분이익 ₩30,000
- 미지급이자 감소액 ₩10,000
- 매출채권(순액) 증가액 ₩15,000
- 법인세부채 증가액 ₩5,000
- (주)세무는 간접법을 사용하여 영업활동현금흐름을 산출하며, 이자지급 및 법인세납부는 영업활동으로 구분한다.

- ① ₩105,000 ② ₩115,000 ③ ₩125,000 ④ ₩135,000 ⑤ ₩145,000

20.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미래 사건을 고려하여 충당부채 금액을 추정한다.
- ② 우발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다면 주석으로 공시한다.
- ③ 충당부채와 관련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비용은 제삼자의 변제와 관련하여 인식한 금액과 상계하여 표시할 수 있다.
- ④ 당초에 다른 목적으로 인식된 충당부채를 그 목적이 아닌 다른 지출에 사용할 수 있다.
- ⑤ 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기간 경과에 따라 증액하고 해당 증가 금액은 차입원가로 인식한다.

21. (주)세무의 20×1년도 법인세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도 법인세비용은?

- 20×1년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1,000,000이다.
- 20×1년 10월 말에 자기주식처분이익 ₩20,000이 발생하였다.
- 20×1년 말 재고자산평가손실의 세법상 부인액은 ₩30,000, 접대비 한도초과액은 ₩50,000이다.
- 20×1년 초에 ₩3,000,000에 취득한 토지의 20×1년 말 현재 공정가치는 ₩3,100,000이다. (주)세무는 토지에 대해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으나, 세법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은 매우 높다.
- 법인세율은 20%로 매년 일정하며, 전기이월 일시적차이는 없다고 가정한다.

- ① ₩190,000 ② ₩194,000 ③ ₩210,000 ④ ₩220,000 ⑤ ₩234,000

22. 자본항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분상품의 상환이나 차환은 자본의 변동으로 인식하지만,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는다.
- ② 확정수량의 보통주로 전환되는 조건으로 발행된 전환우선주는 지분상품으로 회계처리한다.
- ③ 기업이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자본에서 차감하며,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매도, 발행,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 ④ 액면주식을 액면발행한 경우, 발생한 주식발행 직접원가는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차변에 기록된다.
- ⑤ 보유자가 발행자에게 특정일이나 그 후에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금액으로 상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우선주는 지분상품으로 분류한다.

23. (주)세무의 리스거래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세무의 리스 회계처리가 20×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현재가치 계산 시 다음에 제시된 현재계수표를 이용한다.)

○ 리스기간 : 20×1. 1. 1. ~ 20×4. 12. 31.

○ 고정리스료 : 리스기간 매년 말 ₩100,000 지급

○ 리스계약 체결시점의 내재이자율은 연 8%이며, 리스기간 종료시 추정 잔존가치는 ₩5,000이고, 보증잔존가치는 없다.

○ 리스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 20×1년 말 현재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는 각각 ₩248,408과 ₩257,707이다.

○ 20×2년 1월 1일 (주)세무는 잔여 리스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리스계약 조건변경에 합의하였다. 변경된 계약은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 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리스계약 변경시점의 새로운 내재이자율은 연 10%이다.

| 기간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 |
|----|---------------|--------|---------------|--------|
| | 8% | 10% | 8% | 10% |
| 1 | 0.9259 | 0.9091 | 0.9259 | 0.9091 |
| 2 | 0.8573 | 0.8265 | 1.7833 | 1.7355 |
| 3 | 0.7938 | 0.7513 | 2.5771 | 2.4869 |
| 4 | 0.7350 | 0.6830 | 3.3121 | 3.1699 |

- ① ₩62,730 감소
- ② ₩74,389 감소
- ③ ₩97,770 감소
- ④ ₩101,194 감소
- ⑤ ₩116,357 감소

24. (주)세무는 20×2년도 장부마감 전에 다음과 같은 중요한 오류를 발견하였다. (주)세무의 20×2년도 오류수정 전 당기순이익이 ₩500,000일 때, 오류수정 후 당기순이익은?

- 20×1년 기말재고자산을 ₩10,000 과대평가하였으며, 20×2년 기말재고자산을 ₩5,000 과소평가하였다.
- 20×1년 미지급이자를 ₩7,000 과소계상하였으며, 20×2년 미지급이자를 ₩3,000 과소계상하였다.
- 20×2년 초에 취득한 투자주식(지분율 30%)에 대하여 지분법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원가법으로 잘못 회계처리하였다. 20×2년 중에 ₩6,000의 중간배당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며, 피투자회사의 20×2년도 당기순이익은 ₩400,000이다.

- ① ₩595,000 ② ₩601,000 ③ ₩603,000 ④ ₩633,000 ⑤ ₩639,000

25. (주)세무는 정상원가계산을 사용하며, 20x1년 재고자산 및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 | 기초 | 기말 |
|------|---------|---------|
| 직접재료 | ₩20,000 | ₩30,000 |
| 재공품 | 25,000 | 38,000 |
| 제품 | 44,000 | 32,000 |

- 당기의 직접재료 매입액은 ₩90,000이다.
- 당기의 직접노무원가 발생액은 ₩140,000이다.
- 직접노무시간당 직접노무원가는 ₩40이다.
- 당기의 매출액은 ₩300,000이며, 매출총이익률은 20%이다.

직접노무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예정배부할 때, 20x1년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율은?

- ① ₩6.0 ② ₩6.6 ③ ₩7.0 ④ ₩7.4 ⑤ ₩7.8

26. (주)세무는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20x1년 변동제조간접원가와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산은 각각 ₩540,000과 ₩625,000이다. 20x1년 기준조업도는 1,000직접노무시간이며, 실제직접노무시간은 900시간이다. 제조간접원가의 조업도 차이가 ₩110,000(불리)이라면 제조간접원가의 능률차이는?

- ① ₩20,820(불리) ② ₩41,040(불리) ③ ₩62,680(불리)
 ④ ₩86,680(불리) ⑤ ₩95,040(불리)

27. (주)세무는 단일 공정을 통해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평균법으로 종합 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다. 원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투입되며,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20x1년 당기착수량은 1,250개이며, 당기완성량은 1,210개, 기초재공품 수량은 250개(가공원가 완성도 80%), 기말재공품 수량은 50개(가공원가 완성도 60%)이다. 품질검사는 가공원가 완성도 40%시점에서 이루어진다. 정상공손허용률은 10%이며, 검사시점 통과기준과 도달기준을 각각 적용하였을 때 두 방법간의 비정상공손수량의 차이는 몇 개인가?

- ① 20개 ② 22개 ③ 24개 ④ 26개 ⑤ 28개

28. (주)세무는 20x1년 초에 설립되었다. 20x1년 생산량과 판매량은 각각 3,200개와 2,900개이다. 동 기간동안 고정제조간접원가는 ₩358,400 발생하였고, 고정판매관리비는 ₩250,000 발생하였다. 전부원가계산을 적용하였을 때 기말제품의 단위당 제품원가는 ₩800이다. 변동원가계산을 적용하였을 때 기말제품재고액은? (단, 재공품은 없다.)

- ① ₩192,600 ② ₩198,000 ③ ₩206,400 ④ ₩224,000 ⑤ ₩232,800

29. (주)세무는 20x1년 제품 A와 B를 각각 1,800개와 3,000개를 생산·판매하였다. 각 제품은 배치(batch)로 생산되고 있으며, 제품 A와 B의 배치당 생산량은 각각 150개와 200개이다. 활동원가는 총 ₩1,423,000이 발생하였다. 제품생산과 관련된 활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 활동 | 원가동인 | 활동원가 |
|------|--------|------------|
| 재료이동 | 이동횟수 | ₩189,000 |
| 재료가공 | 기계작업시간 | 1,000,000 |
| 품질검사 | 검사시간 | 234,000 |
| 합계 | | ₩1,423,000 |

제품 생산을 위한 활동사용량은 다음과 같다.

- 제품 A와 B 모두 재료이동은 배치당 2회씩 이루어진다.
- 제품 A와 B의 총 기계작업시간은 각각 300시간과 500시간이다.
- 제품 A와 B 모두 품질검사는 배치당 2회씩 이루어지며, 제품 A와 B의 1회 검사시간은 각각 2시간과 1시간이다.

제품 A에 배부되는 활동원가는? (단, 재공품은 없다.)

- ① ₩405,000 ② ₩477,000 ③ ₩529,000 ④ ₩603,000 ⑤ ₩635,000

30. (주)세무는 제조간접원가를 직접노무시간당 ₩160씩 예정배부하고 있다. 20x1년 실제발생한 제조간접원가는 ₩180,000이다.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는 기말재고자산(재공품과 제품)과 매출원가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20x1년의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 가운데 30%에 해당하는 ₩6,000을 기말재고자산에서 차감하도록 배분하였다. 20x1년 실제발생한 직접노무시간은?

- ① 1,000시간 ② 1,100시간 ③ 1,125시간 ④ 1,200시간 ⑤ 1,250시간

31. (주)세무는 제품 A와 B를 생산하고 있으며, 제품 A와 B는 모두 절단공정과 조립공정을 거쳐 완성된다. 20x1년 각 공정에서의 직접노무인력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 | | |
|--------------|------|---------|---------|
| | | 절단공정 | 조립공정 |
| 직접노무원가 실제발생액 | | ₩30,000 | ₩40,000 |
| 실제직접노무시간 | 제품 A | 1,200시간 | 600시간 |
| | 제품 B | 800시간 | 200시간 |

제품 A와 B의 직접재료원가는 각각 ₩20,000과 ₩15,000이며, 제조간접원가는 직접노무원가의 120%를 예정배부한다. 제품 A의 당기제품제조원가는? (단, 재공품은 없다.)

- ① ₩125,600 ② ₩126,000 ③ ₩132,000 ④ ₩138,000 ⑤ ₩142,400

32. (주)세무는 결합공정을 거쳐 분리점에서 주산물 A와 B, 부산물 C를 생산하고 있다. 20x1년 결합공정에 투입된 원재료는 2,200kg이며, 결합원가는 ₩31,960 발생하였다. 제품 A와 부산물 C는 추가가공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제품 B는 추가가공하여 최종 완성된다. 부산물의 원가는 생산기준법(생산시점의 순실현가치법)을 적용하여 인식한다. 20x1년 생산 및 판매자료는 다음과 같다.

| | 생산량 | 추가가공원가 | 단위당 판매가격 | 결합원가 배분액 |
|-------|---------|---------|----------|----------|
| 제품 A | 1,350kg | - | ₩100 | ₩13,950 |
| 제품 B | 550 | ₩11,000 | 320 | ? |
| 부산물 C | 300 | - | ? | ? |
| | 2,200kg | | | ₩31,960 |

순실현가치법으로 결합원가를 배분할 때 제품 A에는 ₩13,950이 배분되었다. 부산물 C의 단위당 판매가격은? (단, 재공품은 없다.)

- ① ₩3.0 ② ₩3.2 ③ ₩3.4 ④ ₩3.6 ⑤ ₩3.8

33. (주)세무의 품질관리 활동원가는 다음과 같다.

| 활동 | 원가(또는 비용) |
|---------|-----------|
| 공손품 재작업 | ₩400 |
| 납품업체 평가 | 500 |
| 불량품 폐기 | 600 |
| 완제품 검사 | 700 |

| 활동 | 원가(또는 비용) |
|--------|-----------|
| 보증수리원가 | ₩2,000 |
| 반품 재작업 | 1,000 |
| 품질교육훈련 | 1,000 |
| 재공품 검사 | 300 |

위 원가(비용)를 다양한 유형별로 구분하여 자세히 분석한 결과, 예방원가(prevention cost)를 현재보다 50% 증가시키면 외부실패원가(external failure cost)를 현재보다 40%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를 실행할 경우, 회사의 이익은 얼마나 증가하는가?

- ① ₩400 ② ₩450 ③ ₩690 ④ ₩700 ⑤ ₩850

34. (주)세무는 단일 제품을 생산·판매한다. 제품 단위당 판매가격은 ₩100, 단위당 변동원가는 ₩60으로 일정하나, 고정원가는 제품 생산범위에 따라 상이하다. 제품 생산범위가 첫 번째 구간(1 ~ 1,000단위)에서 두 번째 구간(1,001 ~ 2,000단위)으로 넘어가면 고정원가가 ₩17,600 증가한다. 첫 번째 구간의 손익분기점이 860단위인 경우, 두 번째 구간의 손익분기점은 몇 단위인가?

- ① 1,150단위 ② 1,200단위 ③ 1,250단위 ④ 1,300단위 ⑤ 1,440단위

35. (주)세무는 A, B, C 세 종류의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 | 제품 A | 제품 B | 제품 C |
|------|----------|----------|----------|
| 매출액 | ₩100,000 | ₩200,000 | ₩150,000 |
| 변동원가 | 70,000 | 110,000 | 130,000 |
| 고정원가 | 20,000 | 40,000 | 30,000 |
| 이익 | 10,000 | 50,000 | (10,000) |

각 제품별 고정원가는 회사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고정원가 ₩90,000을 각 제품의 매출액에 비례하여 배분한 것으로, 제품 생산 여부나 생산 및 판매 수량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발생한다.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제품 C의 생산을 중단하는 경우 제품 A의 매출액은 50% 증가하고, 제품 B의 매출액은 변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품 C의 생산을 중단하면 회사 전체 이익은 얼마나 감소하는가?

- ① ₩1,000 ② ₩3,000 ③ ₩5,000 ④ ₩7,000 ⑤ ₩9,000

36. (주)세무는 사업부 A와 B를 이익중심점으로 두고 있다. 사업부 A는 부품 S를 생산하여 사업부 B에 대체하거나 외부에 판매할 수 있으며, 사업부 B는 완제품 생산을 위해 필요한 부품 S를 사업부 A에서 구입하거나 외부에서 구입할 수 있다. 부품 S 1,000단위를 대체하는 경우 사업부 A의 단위당 최소대체가격은 ₩160이다. 부품 S 1,000단위를 내부대체하면 대체하지 않는 것에 비해 회사 전체 이익이 ₩50,000 증가한다. 이 경우 부품 S 1,000단위에 대한 사업부 B의 단위당 최대대체가격(M)과 대체로 인하여 증가하는 이익을 두 사업부가 균등하게 나눌 수 있는 대체가격(E)의 합(M+E)은?

- ① ₩370 ② ₩380 ③ ₩385 ④ ₩390 ⑤ ₩395

37. (주)세무는 두 공정을 거쳐 제품을 생산·판매하며, 각 공정별 자료는 다음과 같다.

| | 제1공정 | 제2공정 |
|----------|----------|----------|
| 최대생산능력 | 8,000단위 | 10,000단위 |
| 총 고정원가 | ₩400,000 | ₩200,000 |
| 단위당 변동원가 | ₩20 | ₩10 |

제1공정 완성품은 외부 판매시장이 존재하지 않지만, 제2공정에서 추가가공 하여 완제품(양품)을 생산한 후 단위당 ₩120에 모두 판매할 수 있다. 제1공정에서는 공손이 발생하지 않지만, 제2공정 투입량의 5%는 제2공정 종점에서 공손이 되며, 공손품의 처분가치는 없다. ₩80,000을 추가 투입하여 제1공정의 최대생산능력을 1,000단위 증가시킬 수 있다면, 회사 이익은 얼마나 증가하는가?

- ① ₩4,000 ② ₩4,500 ③ ₩10,000 ④ ₩10,500 ⑤ ₩14,500

38. (주)세무는 기계 A, B 중 하나를 구입하고, 이를 사용하여 신제품을 생산하려 한다. 관련 자료를 근거로 작성한 성과표(payoff table)는 다음과 같다. 성과표에서 $P(S_i)$ 는 확률을 의미하고, 금액은 이익을 의미한다.

| 대안 \ 상황 | $S_1 = \text{호황}$ $P(S_1) = 0.4$ | $S_2 = \text{불황}$ $P(S_2) = 0.6$ |
|---------|-------------------------------------|-------------------------------------|
| 기계 A | ₩9,000 | ₩1,000 |
| 기계 B | 7,000 | K |

기계 A의 기대이익이 기계 B의 기대이익보다 더 크며, 호황일 때는 기계 A의 이익이 더 크고 불황일 때는 기계 B의 이익이 더 크다. 완전정보의 기대가치(EVPI)가 ₩600인 경우, 성과표에서 K는 얼마인가?

- ① ₩1,500 ② ₩2,000 ③ ₩2,200 ④ ₩2,300 ⑤ ₩2,500

39. (주)세무는 단일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한다. 제품 단위당 판매가격은 ₩1,000, 단위당 변동원가는 ₩600, 총 고정원가는 ₩1,900,000으로 예상된다. 세법에 의할 경우 총 고정원가 중 ₩100,000과 단위당 변동원가 중 ₩50은 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세무에 적용될 세율이 20%인 경우 세후순이익 ₩41,000을 얻기 위한 제품의 판매수량은?

- ① 4,050단위 ② 4,450단위 ③ 4,750단위 ④ 5,000단위 ⑤ 5,100단위

40. (주)세무는 당기에 영업을 처음 시작하였으며, 실제원가계산을 사용한다. 당기 제품 생산량은 2,000단위이다. 제품 단위당 판매가격은 ₩1,000, 단위당 직접재료원가는 ₩280, 단위당 직접노무원가는 ₩320이고, 당기 총 고정제조간접원가는 ₩200,000, 총 고정판매관리비는 ₩300,000이다. 변동제조간접원가와 변동판매관리비는 존재하지 않는다.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손익분기점은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손익분기점보다 몇 단위 더 많은가?

- ① 100단위 ② 150단위 ③ 200단위 ④ 250단위 ⑤ 300단위

민 법

41.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국제조약이 민사에 관한 것인 때에는 민법의 법원이 된다.
- ②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 ③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法院)이 직권으로 확정한다.
- ④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민사에 관한 것인 때에는 민법의 법원이 된다.
- 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실시된 추상적·일반적 범명제도 법원이 된다.

42. 신의성실이나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는 그 동의 없음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② 변호사의 소송위임에 관한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적당한 범위 내로 제한된다.
- ③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부지의 소유자는 그 도로를 점유·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신의성실 원칙의 위반과 권리의 남용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 ⑤ 숙박업자는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43. 고등학생 甲(18세)은 자신 소유의 X토지를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없이 건설업자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甲이 미성년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추진하더라도 乙은 甲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② 丙이 매매계약 체결시 甲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더라면 주인이 있기 전에 자신의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③ 甲은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단독으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丙이 매매계약 체결시 甲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더라면 乙에게 매매계약의 추진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 ⑤ 甲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丙으로 하여금 자신을 성년자로 믿게 한 경우, 乙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44.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가 청구되더라도 필요하다면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
- ②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 ③ 피성년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성년후견인은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④ 특정후견의 심판이 있더라도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이 제한되지 않는다.
- ⑤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가진다.

45. 민법상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 ② 행위능력의 유무는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판단한다.
- ③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④ 태아는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受贈)행위를 할 수 없다.
- ⑤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권리능력을 상실한다.

46. 부재자의 재산관리를 위해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재산관리인이 권한없이 부재자소유 부동산을 매각하였다면 이후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면 그 처분행위는 유효하다.
- ②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사망을 확인하였다면 법원의 재산관리인 선임결정 취소 전이라도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 ③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포함된다.
- ④ 재산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처리해야 한다.
- ⑤ 법원은 재산관리인에 대해 부재자의 재산으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47. 민법상 재단법인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법인의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 ② 설립자가 그 목적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이를 정할 수 있다.
- ③ 설립자의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에 출연된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설립자는 그 하자를 몰랐더라도 담보책임을 진다.
- ④ 설립자가 생전처분으로 부동산을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에서 출연부동산의 소유권은 그 이전등기가 있어야 법인에게 귀속된다.
- ⑤ 재단법인의 출연자는 재단법인이 성립한 이후에도 착오를 원인으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48. 민법상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민법 제35조는 법인 아닌 사단에도 유추적용된다.
- ② 학교법인 대표자의 직무상 차금(借金)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법인은 민법상 사용자 배상책임을 진다.
- ③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피해자는 직접 대표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④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외형상 직무행위로 보인다면 법인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⑤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법인 사무를 집행함에도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지 않은 자는 민법 제35조에서 정한 대표자로 볼 수 없다.

49.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신임 이사에 대한 변경등기 전에 그 이사가 한 직무행위는 법인에 대하여 무효이다.
- ② 이사의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지 않아도 정관에 규정하였다면, 악의의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 ③ 이사가 직무상의 특정 행위를 위해 선임한 대리인은 법인의 기관이 아니지만, 그 대리행위의 효과는 법인에 귀속한다.
- ④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각자가 법인의 내부적 사무집행을 결정한다.
- ⑤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한 특별대리인은 사원총회에 의해 선임된다.

50. 민법상 법인의 정관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사원총회의 전속적 권한에 속한다.
- ② 정관상 임의적 기재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정관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 ③ 사단법인의 정관에 그 변경 방법이 없어도 정관 변경이 가능하다.
- ④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정관 변경이 필요하다.
- ⑤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51. 민법상 법인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법인은 해산으로 권리능력을 상실한다.
- ② 법원은 직권으로 청산인을 해임할 수 없다.
- ③ 법인의 해산과 청산은 주무관청이 검사·감독한다.
- ④ 해산등기 없이도 법인의 해산 사실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⑤ 법인은 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로 인한 채권자의 지연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52.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일부 신도들이 사찰 운영에 반대하여 신도회에서 탈퇴한 경우에는 사찰이 분열된 것으로 인정된다.
- ② 교회의 구성원들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 ③ 종중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종원은 대리인을 통하여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대표권 제한에 관한 정관을 위반한 대표자의 거래행위는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인 경우에 유효하다.
- ⑤ 비법인 사단의 이사가 없어서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원칙적으로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53.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 ②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은 배타적 지배가 가능하여 거래객체로 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 ③ 토지의 정착물은 토지의 일부로 별개의 부동산이 될 수 없다.
- ④ 동산과 부동산은 그 요건을 달리하여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 ⑤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54. 주물과 종물 및 원물과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민법상 주물의 소유자와 종물의 소유자는 동일인이 아니어도 된다.
- ②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법리는 압류와 같은 공법상의 처분에도 적용된다.
- ③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은 물건은 천연과실이다.
- ④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 ⑤ 민법상 법정과실의 수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55.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 ② 유증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 ③ 무권리자와의 거래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 ④ 채권양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처분행위이다.
- ⑤ 상호 대가적인 의미가 없는 출연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유상행위라고 할 수 없다.

56. 법률행위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매매계약은 성립 당시에 당사자가 누구인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성립할 수 있다.
- ②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당사자는 추인을 통하여 그 법률행위에 효력을 부여할 수 있다.
- ③ 매매계약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④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타인 간의 거래행위를 중개한 경우, 그에 따른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이 부동산 중개보수 제한에 관한 규정들에 위반하였다면 중개보수 약정은 규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서 무효이다.
- ⑤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효과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57.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당사자 일방의 반사회적 동기가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상대방에게 알려졌다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②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 ③ 해외파견된 근로자가 귀국일로부터 일정기간 소속회사에 근무하여야 한다는 사규나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 ④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위약벌이 과도하게 무겁다면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
 - ⑤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도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

58.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공박에는 경제적인 공박뿐만 아니라 정신적·심리적인 공박도 포함된다.
 - ② 무경험은 일반적인 생활경험이 아니라 해당 법률행위가 속한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을 의미한다.
 - ③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공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리행위자가 상대방의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여야 한다.

59.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규정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
 - ②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표시된 의사와 내심의 의사가 다르다는 것을 표의자가 인식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한다.
 - ③ 진의 아닌 의사표시임을 표의자의 상대방이 알고 있었다면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있다.
 - ④ 혼인할 의사 없이 혼인의 청약을 하였고 상대방이 청약을 믿고 승낙하였다면 혼인의 합의는 유효하다.
 - ⑤ 특정 물건을 매도할 의사로 증여한다는 청약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청약을 믿고 승낙을 하였다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다.

60.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 ②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누구도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 ③ 허위의 전세권설정계약에 기하여 등기가 마쳐진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 ④ 가장의 채권양도에서 아직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채무자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 ⑤ 파산자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발생한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중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61.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동기가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기 위하여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한다는 합의까지 있을 필요는 없다.
- ②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에는 동기가 상대방에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 ③ 착오를 이유로 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④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⑤ 과실로 인한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자는 그 취소로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62. 의사표시의 착오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토지의 매수인은 측량을 하거나 지적도와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매목적물이 지적도상의 그것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없다.
- ② 토지를 임차하여 공장을 신설하려는 자가 공장신설허가가 불가능한 토지에 대하여 관할관청에 알아보지도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에게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
- ③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금융채권자금을 대출해 준 금융기관이 위 대출자금이 모두 상환되지 않았음에도 착오로 신용보증기금에게 신용보증서 담보설정 해지를 통지하였다면 금융기관에게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
- ④ 취소를 원하는 표의자는 자신의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여야 한다.
- ⑤ 중대한 과실에 의한 착오가 표의자에게 있음을 상대방이 알면서 이를 이용하였다면 그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63. 사기 및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제3자의 기망에 의하여 연대보증서류를 신원보증서류로 알고 서명날인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 ② 아파트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예정인 사실을 알고도 분양자가 이를 모르는 수분양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사기를 이유로 분양계약의 취소가 가능하다.
- ③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를 행한 경우에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④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될 정도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로 보아야 한다.
- ⑤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수단이 부당한 때에는 위법한 강박에 해당할 수 있다.

64.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의사표시의 도달은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진 경우에 인정된다.
- ② 유언은 유언이 공개되어 유언의 사실이 인지될 수 있을 때에 효력이 생긴다.
- ③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더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④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 ⑤ 의사표시의 도달은 그 효력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65. 민법상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사실행위의 대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 ② 수권행위는 본인과 대리인의 합동행위이다.
- ③ 원인된 법률관계의 존속 중에도 본인은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 ④ 대리인이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으면 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 ⑤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수 있다.

66. 대리권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수권행위에 의해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임의대리인은 처분행위도 할 수 있다.
- ② 본인에게 수인의 대리인이 존재한다면 이들은 공동하여 대리행위를 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 ③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대리인은 쌍방대리를 할 수 있다.
- ④ 대리인이 본인의 허락 없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계약하였다면 그 계약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확정적 무효이다.
- ⑤ 부동산 매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매매계약시 상대방으로부터 강박을 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리인은 해당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67. 민법상 대리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현명 없는 대리인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자신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 ②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대리인이 이중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인 본인이 이에 대해 선의라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의 반사회성은 인정된다.
- ③ 특정한 법률행위를 대리인에게 위임하였더라도 본인 또한 스스로 그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 ④ 대리권 남용의 경우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는 것이 주류적 판례의 입장이다.
- ⑤ 대리행위가 대리권 남용으로 무효라 하더라도 그 행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된다고 함이 주류적 판례의 입장이다.

68.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그의 기존 대리권 범위를 벗어나는 대리행위를 한 경우 표현대리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 ② 채권자에게 주채무자를 위해 보증을 서줄 의사가 있음을 밝힌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보증계약에 관해 주채무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것으로 인정된다.
- ③ 무권대리행위로 체결된 계약에서 위약금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 규정은 무권대리인이 상대방에게 민법 제135조의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④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이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행해지면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은 그 추인에 대한 선·악의를 불문하고 철회권을 상실한다.
- ⑤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 무권대리인은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선·악의를 불문하고 추인을 거절하지 못한다.

69.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대리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한다.
- ②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 ③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④ 본인과 복대리인 사이에는 내부적 계약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에 기한 권리·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
- ⑤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관해서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70.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통정허위표시가 무효라고해서 은닉행위가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 ③ 법률행위 일부가 효력규정을 위반하여 일부무효의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탐구할 때 그 효력규정의 입법취지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 ④ 복수의 법률행위 중 어느 한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 그들간 일체성이 인정된다면 일부무효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해 애초 허가를 잠탈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매매계약은 그 후 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더라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71.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무효인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② 착오취소의 요건이 충족되는 한, 착오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의 포괄승계인에게도 취소권이 인정된다.
- ③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추인한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 ④ 상당 기간 계속된 근로계약이 취소된 경우 그 근로계약은 장래에 관하여만 실효된다.
- ⑤ 추인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취소권은 소멸한다.

72.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있는 추인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권리자의 추인
- ㄴ. 무효인 가장행위에 대한 당사자의 추인
- ㄷ.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

- ① ㄴ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ㄱ, ㄴ, ㄷ

73. 법률행위의 부관인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특정의 제3자가 사망하면 증여를 하겠다는 계약은 정지조건부 계약이다.
- ②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다.
- ③ 물권행위는 조건에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이다.
- ④ 정지조건이든 해제조건이든 그 성취의 효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지 않는다.
- ⑤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자가 과실로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조건의 성취가 의제될 여지가 없다.

74.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인정되면 그 사실은 조건이 아니라 불확정기한이다.
- ②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③ 이자부소비대차에서 채무자는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고 기한 전에 변제할 수 있다.
- ④ 당사자간에 체결된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된다.
- ⑤ 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의 경우 그 요건이 충족되면 채권자의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채권 전액에 대해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75.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일(日)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 ② 기간의 계산은 법률행위에 의하여 민법규정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③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 ④ 기간의 계산은 법령이나 재판상의 처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민법규정에 의한다.
- ⑤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76.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매매의 일방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 ② 취소권의 존속기간은 제척기간이다.
- ③ 형성권 이외에 청구권도 제척기간의 경과에 의해 소멸할 수 있다.
- ④ 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생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기산한다.
- ⑤ 제척기간의 도과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다.

77. 형성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의 변동이 생긴다.
- ② 계약의 합의해지는 형성권의 행사이므로 철회하지 못한다.
- ③ 상계권의 행사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 ④ 재판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한다.
- ⑤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다.

78.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취득시효 완성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의 등기청구권
- ② 수급인의 대금채권담보를 위한 완성물에 대한 유치권
- ③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④ 점유권
- ⑤ 인격권

79.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지만,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 ②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이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않아 취소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③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 ④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 ⑤ 채권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80. 甲은 자신 소유의 X토지에 관해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당시 甲은 乙로부터 약정된 계약금 전액을 수령하였다. X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였으며 당시 甲과 乙은 매매계약 후 관할청의 허가를 받을 생각이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甲과 乙이 관할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으면 위 매매계약은 소급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 ② 관할청에 허가신청이 접수된 후에도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면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③ 관할청의 허가를 받기 전까지 甲과 乙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④ 관할청의 허가를 받기 전까지 乙은 유동적 무효를 이유로 甲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 ⑤ 관할청의 허가를 받기 전이라면 乙은 甲에게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것을 소구할 수 있다.